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뉴시스 : 『“연기로 안 보이는데 성에도…”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전략) 안면마스크에 성에가 끼면 소방관의
 구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북소방서
 구조대원인 김○○ 소방관은 “성에가 끼면 일단 시야

확보가 잘 안 돼 구조활동에 지장이 많다”면서 “조명
 을 비쳐도 잘 안 보이는데 성에까지 끼면 환자 구출
 후 탈출 때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종로소방서 장비관리팀 관계자는 “배태랑 소방관들
 이야 공기호흡기의 압축공기를 적절히 조절해 성에
 끼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완전제
 거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 조○○ 장비계장(소방
 령)은 “어차피 구조현장은 칠흙같은 어둠 때문에
 명암만 구분될 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성에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
 다.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를 공급하는
 S업체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당 150만~170
 만 원 선인 공기호흡기 가격안에서는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하지만 제품 설계단계에
 서부터 공기흐름을 통해 성에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
 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9일자 『“연기로 안 보이는데 성에도…”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의 기사에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공기호흡기 면체(안면마스크) 부분에 온도차로 인한 성애가 뿌옇게 끼어서 소방관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애쯤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차피 구조현장은 칙흙같은 어둠 때문에 명암만 구분될 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성애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터뷰에 응한 조OO 씨는 공기호흡기 면체의 성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차피”라는 표현과 “성애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소방 공기호흡기 관련).
- 내 용 : 지난 11월 29일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기사 중 소방방재청 소방령 조OO씨가 “공기호흡기에 성애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공기호흡기 면체에 끼는 성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12. 14일 계약된 언론사에 송고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06. 12. 14. 09:00

시부터 2006. 12. 15. 09:00까지 뉴시스 홈페이지 초기화면(www.newsis.com에 접속 후 모니터 상에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각각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2006. 11. 29자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며, 기사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드림위즈 등)에 공문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바로잡습니다> 소방 공기 호흡기 관련』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해양수산부가 긴장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불량방수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피신청인 : 노컷뉴스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컷뉴스 :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내 용 : 해양수산부가 최근 방수복 인장강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형식승인시험 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했지만 방수복에 사용되는 원단고무 상당수가 불량품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에 따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는 인장강도 기준으로 발생했던 불량 방수복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장강도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불량 방수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방수복 원단고무가 상당수 불량인 경우가 많아 아무리 좋은 제작방법으로 방수복을 만들어도 불량제품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수복 제작 전문가는 최근 국내 6개 방수복업체의 원단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7%인 4개 업체의 원단고무 재질이 당기면 쉽게 부서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불량 원단고무로 만든 방수복은 실제로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착용을 할 수 없거나 입더라도 제대로 방수가 안 돼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전문가는 해양수산부가 인장강도기준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정작 가장 중요한 불량 원단고무의 문제점을 간과했다며 이번 법 개정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소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일관할 경우 불량 방수복 문제는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2일자 『해수부, 불량 방

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최근 방수복 인장강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형식 승인시험 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했지만 방수복에 사용되는 원단고무 상당수가 불량품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한 방수복 제작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근 6개 방수복 업체의 원단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7%인 4개 업체의 원단고무가 당기면 쉽게 부서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장강도 문제와 관련 방수복 검증결과 및 외국의 관련기준, 시험기관, 검사단체 및 관련업체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인장강도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방수복의 고무 원단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장시험시 당겼을 때 파단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단고무가 먼저 파단되어 인장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존력 시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인장시험에 합격한 방수복 원단 중에 인장시 고무부분이 파단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무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경화되거나 수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선박검사시 또는 승선검사시에 구명설비(방수복 등)도 확인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1월 22일자 인터넷 뉴스면에 실린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1) 우리부에서는 인장강도 문제와 관련 방수복 검증결과 및 외국의 관련기준, 시험기관, 검사단체 및

관련업계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인장강도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수복의 고무원단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장시험시 당겼을 때 파단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단고무가 먼저 파단되어 인장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온력 시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인장시험에 합격한 방수복 원단 중에 인장시험시 고무부분이 파단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고무제품의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 고무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경화되고 수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선박검사시 또는 승선점검시에 구멍설비(방수복 등)도 확인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에 그쳐”』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위 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관련 해수부의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5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데려간 연수생들을 방치하여 국제미아신세로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용 달)

피신청인 : SBS-TV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SBS 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1월 18일 20:00)

내 용 : ▷앵커 :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교육은커녕 벌써 2년째 오도 가도 못 하는 떠돌이 신세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OO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미국 동부 뉴저지의 한 영어학원. 한국인 7명이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은 송출업체를 통해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고 영주권 취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일인당 1만 7천 달러, 2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말부터 들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밤에 12시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으니까 먼저 와 계시던 분이 나오시더니 “어, 왜 오셨어요, 사기인데”. 미국에서 처음 들은 한국 사람 말이에요.

▷기자 : 방값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방값이 나왔는데 보니까 8천 불이 밀려 있는 거예요. 안 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동시에 짐을 싸서 하루에 다 도망 나왔어요.

▷기자 : 계약했던 물리치료사 면허 강의는 금세 끝났고 6개월짜리 영어 강의는 넉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영어학원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일부는 1년에 2천 8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들을 미국에 보낸 송출업체는 올해 3월 파산했습니다.

공단 측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직원 :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수생들이)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 번 드린 거였어요.

▷기자 : 무책임한 해외 인력 송출업체와 산업인력 공단을 믿었던 피해자들만 국제미아 신세로 떠돌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SBS-TV 지난 11월 18일 「SBS 8뉴스」 프로그램에서 “‘국제미아 2년’ 미국 간 물리치료사들”이라는 제목 및 “송출업체 사기에 공단 측도 나몰라

라”라는 부제 하에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으며 약속한 교육은커녕 2년째 오도 가도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연수과정을 직접 운영한 것은 공단과 연수과정 운영계약을 체결한 연수업체이며, 공단의 중재 노력에도 연수생 본인의 선택에 의해 미국에 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제미아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전 승낙없이 비밀누취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해외취업알선, 연수, 해외인턴파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해외취업관련사업 내지 행사를 취재·보도하되, 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협조 및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31일까지 SBS-TV 「8시뉴스」 중에 제1항의 내용을 방송하되, 분량은 진행자 멘트를 포함하여 최소 1분 30초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본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포기하며,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 8뉴스」 프로그램 (2007년 1월 20일 21:22)

내 용 : ▷앵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외 취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와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국내 청년 실업자는 37만 명에 달합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28살 김○○ 씨는 대기업 대신 일본 IT업체 취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일본취업 연수생) : 갔다 와서 한국에서의 대우 조건도 더 좋을 것 같고, 저로서는 일본어도 배우고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자 : 일본 IT업체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수 업체는 서울에만 6곳입니다.

열 달 동안의 교육 과정을 마친 연수생들의 일본 취업률은 평균 82%.

연봉 수준도 국내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IT분야에서만 올해 안에 1천여 명이 일본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본에서도 한국 인력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입니다. (후략) □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e조은뉴스 : 『철용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0일자 1~11면)

내 용 : 30여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사건에도 모두 검찰 선에서 무혐의 종결처분을 받았던 ○○사 이모 이사장에게 처음으로 납득할만한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다.

2004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중략)

이상과 같은 점을 더 조사하면 배임의 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으로 만연히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원처분 검사는 피항고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금액을 횡령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항고인이 박○○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물증을 찾기 어렵고, 박○○이 제출한 보수 12억 7,000여만 원의 소비내역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중에는 동인이 피항고인 딸 이○○ 명의의 임야 매수대금으로 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장지급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다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자금이동 경로 등도 애매하여 횡령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첫째, 피항고인의 새마을금고 경리장부와 수표대장을 조사하여 피항고인이 박○○에게 교부하였다고 하

신청인 재단이 토지처분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사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피항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입금 처리한 다른 수표로 바꾸어서 항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표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피항고인은 자신의 딸 이○○ 명의의 땅 매도자금으로 위장하여 금 3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박○○이 제출한 보수금 사용내역서 중 기록제 1664-1675에 편철된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장매매 의혹이 짙다.

박○○과 피항고인도 위 땅 명의자가 피항고인의 딸이라는 점을 일체 숨기고 있고 위 명의인인 이○○도 자신이 피항고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피항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대금지급 방법도 2회에 걸쳐 1억 원, 2억 3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위 이○○의 위 땅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밝혀 위 땅이 실질상 피항고인 소유인지 여부를 밝히고 박○○이 대금을 지급한 수단, 경로 등을 밝혀 위장매매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박○○이 2002. 2. 20. 건물주 최○○에게 전세보증금 변환 명목으로 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임대계약서와 영수증(1649, 1650)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장거래임이 엇보인다. (중략)

넷째, 박○○은 2002. 12. 21. 금 2억 원, 5. 13. 금 9억 7,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관한 상태나 사용내역이 극히 애매하다. 이는 피항고인이 일부만 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송금 처리 등을 한 의심이 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30일자 1~11면 『철옹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 제하의 기사에서 “고검-‘업무상횡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 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지에 게재된 재기 수사명령인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4570호 사건에서의 재기수사 명령결과와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들의 항고, 재항고 결과도 서울고등검찰청 2005불항243호 및 대검찰청 2005재항721호로 혐의없음 처분되어 종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사는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e조은뉴스 제273호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철옹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라는 제목 하에 ‘고검 업무상횡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목으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 2004. 2.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고 마치 최근에 새로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 수

사한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 세무사는 지급받은 수입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할 것이 예상되자 수입료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맞추기 위해 이사장 딸 명의의 부동산을 세무사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단말기를 조작해서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출, 송금 및 수년간의 수입, 지출 등이 적법, 투명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조은뉴스 2007. 1. 17.자(제279호) 5면에 원색의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e조은뉴스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24면)

내 용 : 본사는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제273호의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철용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라는 제목 하에 '고검 업무상황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목으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 2004. 2.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상황령

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고 마치 최근에 새로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들의 항고, 재항고 결과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 세무사는 지급받은 수입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할 것이 예상되자 수입료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맞추기 위해 이사장 딸 명의의 부동산을 세무사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단말기를 조작해서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출, 송금 및 수년간의 수입, 지출 등이 적법, 투명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③ 세무사 사건으로 이모 씨가 고소됐을 때 노량진경찰서 모 경찰이 조사를 했고, 기소취지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검사는 전화로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검찰의 압력에 의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 없는 보도였습니다. ④ 서울시 정관변경으로 수천억을 챙기라고 하여 재단법인 ○○사의 정관을 변경시켜주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수천억을 챙긴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재단법인 ○○사는 서울시의 적법한 절차로 정관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 없이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1면부터 11면 이슈면의 경찰청과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재단법인 ○○사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위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며,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이웃 상인의 생선을 훔쳤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K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8.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KBS-TV : (1) 「KBS 8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0월 16일 20:00)

내 용 : ▷앵커 : 수산시장에서 활어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상인들이 참다 못해, 폐쇄회로 TV를 확대해 살펴봤는데, 알고보니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임○○ 기자입니다.

▷기자 : 이른 새벽,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30대 남자가 배달온 활어 다섯 상자를 인심 쓰듯 옆집 수족관에 부어주더니 한 상자는 슬그머니 자기 수족관에 쏟아 붓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수족관에서 몰래 광어를 꺼내 팔려다 흥정이 깨지자 자기 수족관으로 생선을 밀어 넣습니다.

옆집 횡감을 팔아주고, 돈은 자기가 챙기기도 합니다.

이웃 상인들은 최근 번번이 수족관 속 활어들이 사라지자 폐쇄회로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피해자 : 우리 광어가 저 집에 넘어가 있는거예요.

요. 아닌데... 이걸 아닌데... 한번 봐보자.

▷기자 : 화면에 잡힌 용의자는 다름 아닌 옆 가게 주인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천만 원 어치의 생선을 훔쳐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 비밀비재하게 시장에서는 고기들이 많이 없어져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주인 없는 기회가... 우발적으로.

▷기자 :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입니다.

(2) 「KBS 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0월 16일 21:00)

〈보도내용 (1) 참조〉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0월 17일 06:00)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TV는 지난 10월 16일 「KBS 8뉴스타임」, 「KBS 뉴스9」, 10월 17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이 활어 등을 상습적으로 도난당하자 가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폐쇄회로 화면에 찍힌 범인을 잡았는데 다름 아닌 옆집 가게 주인이었다고 보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여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며, CCTV 자료화면 또한 원본 그대로 방영하여 주변인들에게 신분 노출되는 등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

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2007. 1. 12까지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가 조선막사발 가마터가 아닌 송기가마터로 판명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진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진주신문 : 『조선막사발 터 논쟁 ‘중지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2일자 1면)

내 용 : 진주신문이 해외취재를 포함한 ‘기획취재’를 통해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의 국

보 도자기 ‘조선막사발(진주막사발, 이도다완)’ 복원 사업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사남면 가야비파구룡요(김○○ 씨 운영)에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도다완 가마터’라고 알려졌지만 도요지, 즉 가마터가 발굴되지 않아 사천시는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하지만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2군데 중 사천시 사남면 가마터만 조사되고, 곤명면 가마터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곤명 가마터’가 ‘조선막사발 가마터’로 인정될 경우 조선막사발 복원 사업은 재추진 될 전망이다.

이런 결정은 사천시가 지난 3월 30일 ‘사천조선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복원사업 중단과 이 사업을 위해 확보키로 한 88억 원의 예산 도예센터 건립 ▷사업 추진 당시 조사예정지로 결정됐지만 조사가 없었던 사천시 곤명면 발굴 조사 예산 500만 원 확보 ▷‘이도다완 가마터 또는 아가노 도자기 고향 인정이란 공식용어 사용 금지’ 등이다. (중략)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천 곤명요 김△△ 씨는 “김○○ 씨의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주장하면서 “김○○ 씨의 도요지는 도자기가 아닌 송기가마터로 판명됐다”고 지난 6일 본지에 기고문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사천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김○○ 씨의 가야비파구룡요에서 도요지가 발견되지 않아 사천막사발 복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됐다”고 잘라 말했다. “공식 결과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즉 김○○ 씨가 가마터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가마터가 발견되지 않고 도자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2002년께 사남면 가야비파구룡요를 시굴조사했지만 조선막사발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조선막사발 가마터도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에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란 제목으로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이 김OO 씨가 운영하는 가야비과구룡요가 발굴조사에서 조선막사발이 나오지 않아 사천시에서는 공식 포기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김OO가 경영하는 가야비과구룡요와는 무관한 것이며, 아울러 조선막사발 복원사업을 위한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2006년 3월 30일에 있었던 사천시 간담회는 그 참석자 또한 외부인 4명 뿐이었고 그 어떤 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야비과구룡요와 「조선막사발 복원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며 ‘옹기 가마터가 아닌 고급 도기 가마터로 바로잡으며 김OO 씨가 경남매일에 게재하는 「고려다완 이야기」도 본지에서 잘못 다루어 명예를 훼손시킨 점 깊게 사과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 및 ‘가야비과구룡요’를 운영하고 있는 김OO씨의 반론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리며, 김OO 씨께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에 『조선막사

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내용을 보도합니다.

첫째,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이 김OO 씨가 운영하는 가야비과구룡요에서 가마터가 발굴되지 않아 사천시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천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며 사업이 공식적으로 포기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사천시가 지난 3월 30일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간담회’에서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나 그 간담회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었습니다.

셋째, 간담회 내용 중 ▷복원사업 중단과 이 사업을 위해 확보키로 한 88억 원의 예산 도예센터 건립 ▷사업추진 당시 조사예정지로 결정됐지만 조사가 없었던 사천시 곤명면 발굴조사 예산 500만 원 확보 ▷ ‘이도다완 가마터 또는 아가노 도자기 고향 인정이란 공식용어 사용금지’ 등은 실제 거론이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간담회 참석자로 보도한 내용은 참석대상자와 참석자가 혼동되어 정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참석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천 곤명요 김△△ 씨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김OO 씨의 도요지가 도자기가 아닌 옹기 가마터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OO 씨는 옹기 가마터가 아닌 고급 도기 가마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진주신문 2007년 1월 2일자 1면 좌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진 조정 대상기사의 제목 중 ‘조선막사발 터 논쟁’과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이견 조정대상기사가 실린 2006년 12월 12일자 5면 김△△ 씨의 기고문과 같은 크기의 신청인 기고문을 2007년 1월 2일자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진주신문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해대교 참사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성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2TV : 「VJ특공대」 프로그램 (2006년 10월 6일 21:55)

내 용 : ▷나레이터 : 하루종일 연락이 두절된 남

편의 생사 확인 아내와 아들도 절박한 마음에 한가닥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

▷김○○ : 60정도 초록색 잠바. 아니 그린색 잠바

▷장례식장 관계자 : 여자예요?

▷김○○ : 아니요 우리 남편이에요.

▷장례식장 관계자 : 남편이세요?

▷김○○ : 네, 그린색 잠바 입었거든요.

▷장례식장 관계자 : 네 네, 그린색 잠바.

▷김○○ : 네, 목걸이 했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 네, 목걸이 하신 분 계세요.

▷김○○ : 어~어떻게?

▷장례식장 관계자 : 그린색 잠바요?

▷나레이터 : 내 남편, 내 아버지가 그 끔찍한 현장에 있었을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성○○ :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장례식장 관계자 : 예, 조금만 계세요.

▷장례식장 관계자 : 잠바 입으신 분이 없는데요. 여기는요

▷김○○ : 아니, 아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 :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김○○ : 목걸이, 있다고

▷장례식장 관계자 : 남자 목걸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안 입었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 몰라요. 그건 다 타가지고... 머리가 좀 벗겨 지셨나요?

▷성○○ : 머리가 어느 정도요?

▷장례식장 관계자 : 벗어진것 같던데.

▷성○○ : 키가 좀 작고요.

▷장례식장 관계자 : 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김○○ : 아이~난 몰라 어떻게 하니 ○○아!

▷장례식장 관계자 :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여요?

▷성○○ : 60이요.

▷장례식장 관계자 : 60은 안 돼 보이던데.
 ▷김OO : 보여주세요. 우리.
 ▷장례식장 관계자 : 보여드릴 테니까.
 ▷김OO : 네. 보여주세요.
 ▷성OO : 가만 있어. 내가 볼테니까.
 ▷김OO : 아니야 내가 봐야, 내가 봐야 알아 어떻게 어떻게...
 ▷나레이터 : 어쨌면 아침에 멀쩡이 배웅하던 남편을 낫선 곳에서 형체 없는 죽음으로 마주해야 할 상황.
 ▷장례식장 관계자 : 아줌마랑 아들만 들어가세요.
 ▷성OO : 고모랑 고모부세요.
 ▷김OO : 네.
 ▷나레이터 : 그래도 설마 설마 했건만...
 ▷성OO : 머리가 많이 빠져 가지고..., 여기가 똑같다.
 ▷나레이터 :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은 오열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 지난 2006년 10월 6일 21시 55분에 「VJ 특공대」 '서해대교 참사기록' 방송에서 서해대교 참사의 사건개요 및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방송 중 유가족 실제 모습을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과없이 실제 상황을 보도하면서 유가족의 모습 중 음성이 그대로 나왔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 언급된 성명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체를 확인하고 나왔을 때 명확히 인터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에까지 나와 동의 없이 촬영을 실시해 방송하여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6년 12월 29일까지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이 동료교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70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조OO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재부 : 경기중재부
 접수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의 (반론)
 취하 (손배)

보도내용

우리일보 :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내용 :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교사와 남 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S중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47, 여)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문을 내며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47, 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최근 구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폭행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모든 행동과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몰상식한 행동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 걱정된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우리일보는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같은 학교 재직 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 교사와 남 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S중학교 재직 중인 교사 조모(47) 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이 이혼녀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모(47) 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 이르자 최근 구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모든 행동과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들이 몰상식한 행동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된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모 씨는 동료교사 구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구모 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

를 받던 중 맞고소를 했다고 하였으나 정신분열의 원인이 조모 씨의 폭행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구모 씨의 맞고소 시점도 보도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조모 씨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조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위 기사 관련 구모 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구모 씨가 정신분열증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의 위 보도는 구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폭행 및 그에 따른 정신분열 초래 등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실 확정 이전에 상대방 구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 사실화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피해자 조모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7년 1월 8일 23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동료 교사 폭행 물의)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우리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8일자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